

★ ◎

본부장 방침 제648호

문서번호	택지계획팀-3019
보존기간	준영구
결재일자	2015.11.26
공개여부	공개
일상감사	대상아님

팀 원	팀원	택지계획팀장	마곡사업처장	택지사업본부장
				11/26
최명제	윤형식	최철문	이광윤	정현규
협 조				

**마곡 중앙광장 조성공사 설계용역 계약 변경  
검토 보고**

서울특별시 SH공사

(택지사업본부 마곡사업처 택지계획팀)

## 마곡 중앙광장 조성공사 설계용역 계약 변경 검토 보고

마곡광장 조성공사 설계 관련, 계약심사 완료, 공사 발주 및 최종성과품 작성 등을 위해 과업기간 연장이 필요하여 검토 보고합니다.

### □ 마곡광장 설계용역 개요

- 용역명 : 마곡 중앙광장 조성공사 설계용역 (면적 : 12,979㎡)
- 도급자 : (주)우리동인건축사사무소 외 5개사
- 도급비 : 1,200,749,000원
- 용역기간 : 2013.08.28 ~ 2015.11.30.

### □ 추진 경위

- 설계용역 착수 : '13. 8.28.
- 디자인 심의 : '15. 1.28.
- 설계 VE : '15. 8.20.
- 계약심사 요청 : '15.10.16.(SH → 서울시 계약심사과)
- 계약심사 보완 요청 : '15.10.21.(서울시 계약심사과 → SH공사)
- 계약심사 보완 제출 : '15.11.19.(SH → 서울시 계약심사과)
- 발주타당성 및 입찰참가 자격기준 심사위원회 개최 : '15.11.13.
- 계약심사 재보완 요청 : '15.11.24.(서울시 계약심사과 → SH공사)

### □ 계약 변경 검토

- 관련 근거
  - (주)우리동인건축사사무소 제2015-M-33호(2015.11.25.)  
'마곡 중앙광장 설계용역 계약기간 변경 및 추가과업 시행 관련'
  - 마곡 중앙광장 설계용역 과업지시서 5.2.3항, 26.1.3항

#### 5. 과업수행기간

5.2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.

5.2.3 당초 과업수행에서 예기치 못한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하게 될 때

#### 26. 설계변경

26.1 발주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.

26.1.3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용역의 중지 등에 따른 과업기간의 연장

- 계약 변경 검토

- 변경 사유 : 서울시 계약심사 완료, 공사 발주 및 최종성과품 제출을 위한 추가 과업기간 약 4개월 소요 예정

- 계약 변경(안)

구분	기 정	변 경	비 고
용역기간	2013.08.28. ~ 2015.11.30	2013.08.28. ~ 2016.03.30	123일 연장
도급비	1,200,749,000원	1,200,749,000원	변경없음

- 지체배상금 부과 여부 : 미부과

- ※ 수급인 귀책사유 없음

□ 조치 계획

- 마곡 중앙광장 조성공사 설계용역 계약 변경 사항에 대하여 계약팀에 계약변경 의뢰

붙임 1. 마곡 중앙광장 설계용역 계약기간 변경 및 추가과업 시행관련  
 2. 첨부1. 계약기간 변경내용 및 향후 일정표. 끝.